

의안번호	2202507
의 회 인	김성환의원
회 답 일	2024. 8. 2.
추계번호	24A216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제5항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 정부는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안 제7조의2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 - 1. 수소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 2. 수소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 3.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 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 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 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9.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 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 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 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 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사무소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1	안 제7조의3 (사업의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음(제1항)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2. 국공립연구기관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음(제2항) ○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2	안 제25조의9제2항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음(제2항)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 -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재량규정

3	안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¹⁾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음(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²⁾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제2항) ○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제3항)	재량규정
	안 제25조의12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³⁾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25조의13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제2항) - 1. 제25조의20에 따른 사업의 실시기관 -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5	안 제25조의14 (보급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 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 2. 실용화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2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25조의15(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7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 2. 수소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 3.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 4. 그 밖에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25조의16 (재정상의 조치 등)	○ 정부는 제25조의9⁴⁾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25조의10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재량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국제표준”이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

8	안 제25조의20 (사업의 실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음(제1항) - 1.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 2. 제25조의10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 3. 제25조의12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 4.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 5. 제25조의15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 6.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 8. 제28조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관리 - 9.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 11.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생략)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의9(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7조제5항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다만, 기술개발사업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등을 통해 실시 중임([참고자료 1, 2, 3] 참조)
	안 제7조의2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안 제7조의3 (사업의 실시)	
2	안 제25조의9제2항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안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4	안 제25조의13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5	안 제25조의14 (보급사업)	○ 미대상: 안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을 통해 실시 중임([참고자료 4, 5] 참조)
6	안 제25조의15(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안 제25조의16 (재정상의 조치 등)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8	안 제25조의20(사업의 실시기관)	
9	안 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및 사업 실시,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국제표준화·공용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안 제7조의5항 및 안 제7조의2는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사업의 재원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의3은 안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 다만, 기술개발사업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등을 통해 실시 중임([참고자료 1, 2, 3] 참조)
 - 안 제29조의9제2항은 안 제29조의9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할도록 수소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 제29조의9제2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음
 - 안 제25조의10 및 안 제25조의12는 수소에너지 설비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제품 인증과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5조의13은 수소에너지 설비 부품의 공용화 품목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5조의15는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 융자, 산업재산권 무상 양도,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5조의16은 안 제25조의9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하고 있는 자 및 안 제25조의10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금융상·세제상 지원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5조의20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단에 대한 안 제25조의20 각호의 사업 수행 위탁에 따른 자금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6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될 사업 등의 내용 및 규모와 기준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지원 및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세제상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
- 이에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신헌태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헌태	02-6788-4653	heontshin@nabo.go.kr

[참고자료 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 수소 및 연료전지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 사업 개요

- (목적)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연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자원안보에 기여
- (예산현황) '24년 3,217억원('23년 2,737억원 대비, △480억원)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사업기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력기금	'06~계속 (일반관리예산)	259,479	283,890	275,290	273,703	321,710	313,103
내역사업	수소	19,232	36,378	56,821	69,171	68,195	60,858
	연료전지	32,987	48,031	55,949	52,124	52,854	42,127

□ 사업 내용

- (수소)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수소생산, 수소저장·운송, 인프라 구축 및 안전성 확립을 위한 기술개발
- (연료전지)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의 연료전지 보급목표 달성과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핵심부품·시스템 기술개발, 경제성 확보, 신시장 창출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기관명	2025계획 지원금액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소	출연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60,858	33~100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연료전지			42,127		

[참고자료 2]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R&D)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 사업 개요

- (목적) 수소 고속버스 운행조건 시스템 최적화 및 내구성능을 확보하고, 기존 기체 수소충전소를 액체수소를 활용한 대용량 수소충전소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수소 상용차 보급률 제고에 기여
- (총사업비) 251억원(정부 197억, 민간 54억)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사업기간	2022	2023	2024	2025
예특회계	'22~'25	4,300	6,951	4,600	3,822

□ 사업 내용

-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
 - 1톤급 액체수소 저장용기(BOG 최소화, 재액화 기술) 및 충전, 공급(액체수소 충전을 위한 기화기 기술) 기술개발
 - 수소광역버스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제어기술개발
 - 액체수소저장 충전소 실증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기관명	2025계획 지원금액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 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	출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822	33~100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참고자료 3]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R&D)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 사업 개요

- (목적)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인한 국내 전력계통 불안전성 심화를 해소하고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 저장 기술의 실증 추진을 통해 그린수소 대량 공급기반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총사업비) 394억(정부 293억, 민간 101억)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사업기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특회계	'20~'24	4,000	10,050	8,148	4,316	2,743

□ 사업 내용

- 재생에너지 연계 3MW급 수전해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을 통한 경제성 및 안정성 확보
- 수전해 시스템 장기 운전 성능평가 및 재생전력 연계 신뢰성 평가·운영 기술개발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기관명	2024 지원금액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전해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출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743	33~100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참고자료 4]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보조)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사업기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력기금	'14~계속	274,870	347,568	313,340	321,435	247,000	167,489
기후기금	'22~'23	-	-	-	11,000	6,520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육성 기반 조성
-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민간, 지자체), 지자체자본보조(지자체)

□ 사업 내용

- (주택지원) 단독·공동주택에 신재생설비 보급
 - (건물지원) 상가·공장·일반건물 등 신재생설비 보급
 - (융복합지원) 지자체 주도 에너지융합, 구역복합 보급
 - (지역지원*)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 사회복지시설
- * '22년부터 기후기금(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으로 편성, '24년부터 사업종료 예정

□ 예산 흐름도

- 산업부 → 시행기관(에너지공단) → 보조사업자(시공기업, 지자체 컨소시엄)
- * 지역지원은 산업부에서 지자체로 직접 집행

□ 연료전지 지원 성과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개소수	207	94	86	66	21
보급량(kW)	1,975	1,416	1,427	1,061	556
지원금(백만원)	37,399	23,105	21,248	15,677	7,332

주: 각 연도말 선정기준으로 주택지원+건물지원+융복합지원+지역지원의 합계

[참고자료 5]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 사업 개요

- (목적)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 저리의 사업비 융자 지원하여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예산현황) '24년 3,693억원('23년 4,673억원 대비, △980억원)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개인,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지원내역) 시설자금, 생산·운전자금으로 구분
 - (시설자금) 발전사업자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금 지원
 - (생산운전자금) 제조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 또는 운영 자금 지원
- (지원조건) 융자, 변동금리 2.0%('24년 3Q),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내

자금 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시설 자금	풍력 분야	5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 80% 이내 중견기업 : 60% 이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RE100) 대기업 : 40% 이내
	태양광 분야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기타 에너지원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생산자금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연료전지 지원실적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건수	2	1	—	1	—	1	5
용량(kW)	985	880	—	19,800	—	19,800	41,465
지원금(백만원)	1,999	2,400	—	10,000	—	10,000	24,399